

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#### ○ 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#### 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 ~ 제3조) 목적,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4조)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,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·시행 및 재원 확보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5조 ~ 제6조)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7조 ~ 제10조)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, 평가단의 구성·운영, 평가단의 기능, 평가단 활동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### 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